외국의 문화재관리제도
(일본과 자유중국편)
(外國의 文化財管理制度)
(日本과 自由中國편)

金 鍾 焱
<文化財管理局 行政事務官>

目 次

Ⅰ. 序
Ⅱ. 日本의 文化財管理
1. 中央管理體制(文化廳)
2. 地方管理體制
3. 日本의 文化財關係法令
4. 日本의 文化財
5. 日本의 文化財保護 豫算
6. 古都에 있어서 歷史的 風土의 保存
7. 文化財關係事業 國庫補助率
8. 日本의 文化財普及宣揚事業
9. 日本의 文化財硏究所
10 日本文化財管理實態
Ⅲ.自由中國의 文化財管理
1. 文化財管理行政
2. 行政院文化建設委員會
3. 行政院文化建設委員會 文化資産委員會
4. 中央部處의 文化財管理
5. 國立古宮博物院
6. 自由中國의 文化資産
7. 自由中國의 文化財管理實態
Ⅳ. 맺는말

Ⅰ. 서(序)

지난 5月 아스팍장학생교환계획(奬學生交換計劃)에 의하여 3주간 일본(日本)과 자유중국(自由中國)의 문화재(文化財)를 돌아 볼 기회(機會)가 있었다. 이번 해외연수(海外硏修)는 비록 짧은 기간(期間)이었지만 여러곳을 둘러보고 많은 문화재(文化財)와 관계전문가(關係專門家) 및 업무담당자(業務擔當者)를 접(接)하여 관리실태(管理實態)와 제도(制度)를 우리의 실정(實情)과 비교(比較)할 수 있었다.

일본(日本)에서 2주, 자유중국(自由中國)에서 1주간의 일정으로 동경(東京)에서는 문화청 문화재보호부(文化廳文化財保護部)·동경국립문화재연구소(東京國立文化財硏究所)·동경국립박물관(東京國立博物館)과 명치신궁(明治神宮)을 방문(訪問)하였고, 닛코오(일광(日光))에서는 동조궁(東照宮)·중선사(中禪寺)를, 나고야(명고옥(名古屋))에서는 메이지무라(명치촌(明治村))·나고야성(城)을, 교또(경도(京都))에서는 경도부청(京都府廳)·동서본원사(東西本願寺)·33간당(間堂)·청수사(淸水寺)·은각사(銀閣寺)·평안신궁(平安神宮)을, 나라(내량(奈良))에서는 내량국립문화재연구소(奈良國立文化財硏究所)·내량국립박물관(奈良國立博物

館)·동대사(東大寺)·흥복사(興福寺)·락사사(樂師寺)·법륭사(法隆寺)·평성궁적발굴지(平城宮跡發掘地)를, 그리고 오사카(대판(大阪))에서는 사천왕사(四天王寺)·대판성(大阪城)·국립민족학박물관(國立民族學博物館)등을 견학(見學)하였다. 자유중국(自由中國) 대북(臺北)에서는 행정원문화건설위원회(行政院文化建設委員會)·국립역사박물관(國立歷史博物館)·중정기념당(中正記念堂)·교육부(敎育部)·국립고궁박물원(國立古宮博物院)·대북공자묘(臺北孔子廟)·대북시문헌위원회(臺北市文獻委員會)·대북시립박물관(臺北市立博物館)·용산사(龍山寺)등을 방문(訪問)하였고, 대남(臺南)에서는 적감루(赤崁樓)·연평군왕사(延平郡王祠)·대남공자묘(臺南孔子廟)·오비묘(五妃廟) 등을 돌아 보았다.

여행기간중(旅行期間中) 문화재관계자(文化財關係者)를 만나 의견(意見)을 교환(交換)하였고, 여러가지 문화재관련자료(文化財關連資料)를 수집(蒐集)하였으며 현지(現地)시찰(視察)을 통하여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의 장(長)·단점(短點)을 우리와 비교(比較)하였다.

우리나라가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에 대해서 본격적(本格的)으로 관심(關心)을 가지고 행정(行政)을 시작(始作)한 것은 '60년대초(年代初)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동안 많은 발전(發展)을 이룩하였다. 특(特)히 최근(最近)에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을 전문개정(全文改正)하여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의 각종(各種) 제도(制度)를 개선(改善)하고 새로운 관리체제(管理體制)를 확립하여 보다 능률적(能率的)이고 합리적(合理的)으로 재정비(再整備)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현행제도(現行制度)는 개선(改善)해야 할 부분(部分)이 많아 앞으로도 지속적(持續的)인 연구(硏究)·수정(修正)·보완(補完)이 필요하므로 외국(外國)의 제도(制度)에 대하여 비교(比較)·분석(分析)함은 매우 의의(意義)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Ⅱ. 일본(日本)의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

1. 중앙관리체제(中央管理體制)(문화청(文化廳))

가. 일본(日本)의 문화재관리업무(文化財管理業務)는 문부성(文部省)산하 외국(外局)으로 되어있는 문화청(文化廳)에서 담당(擔當)하며, 문화청(文化廳)에는 문화청장관(文化廳長官)과 차장(次長)이 있고, 장관관방(長官官房)·문화부(文化部)·문화재보호부(文化財保護部)로 나누어져 있으며, 문화재(文化財)와 관련있는 문화청(文化廳) 산하기관으로는 동경(東京)·경도(京都)·내량(奈良) 등 3개(個)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과 동경(東京)·내량(奈良) 등 2개(個) 국립문화재연구소(國立文化財硏究所)가 있고, 자문구구(諮問構構)로 문화재(文化財)보호심의회가 구성(構成)되어 있다.

나. 문화재보호부(文化財保護部)는 문화재감사관(文化財監査官)·기획관(企劃官)·관리과(管理課)·기념물과(記念物課)·미술공예과(美術工藝課)·건조물과(建造物課)·무형문화민속문화과(無形文化民俗文化課)로 편성(編成)되어 있다.(表1)

다. 문화재보호부(文化財保護部)의 담당업무(擔當業務)는 다음과 같다.

(1) 관리과(管理課)

문화재(文化財)의 보존활용(保存活用)에 관한 기획(企劃)·연락·조정문화재(調整文化財)에 관한 국고보조(國庫補助)·국고부담(國庫負擔)·손실보상문화재(損失補償文化財)의 전시회(展示會)·강습회(講習會)등의 주최(主催)와 참가문화재(參加文化財)의 자료수집(資料蒐集)·작성(作成)·이용(利用).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국립문화재연구소(國立文化財硏究所)·문화재보호심의회의(文化財保護審議會議)에 관한 사항(事項)

부내(部內)의 연락·조정업무(調整業務)

(2) 기념물과(記念物課)

사적(史蹟)·명승(名勝)·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특별사적명승천연기념물(特別史蹟名勝天然記念物)(이하 "기념물(記念物)등")의 지정(指定)·해제(解除).

기념물(記念物)등 관리(管理)를 위한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團體) 및 기타 법인(法人)의 지정(指定)·해제(解除).

기념물(記念物)등의 관리(管理)·수리복구(修理復舊)

기념물(記念物)등의 보호(保護)를 위(爲)한 규제(規制)

기념물(記念物)등의 조사(調査)·공개(公開)

기념물(記念物)등의 보존(保存)·활용(活用)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의 보호(保護)

<表1> 문화청의 기구도(文化廳의 機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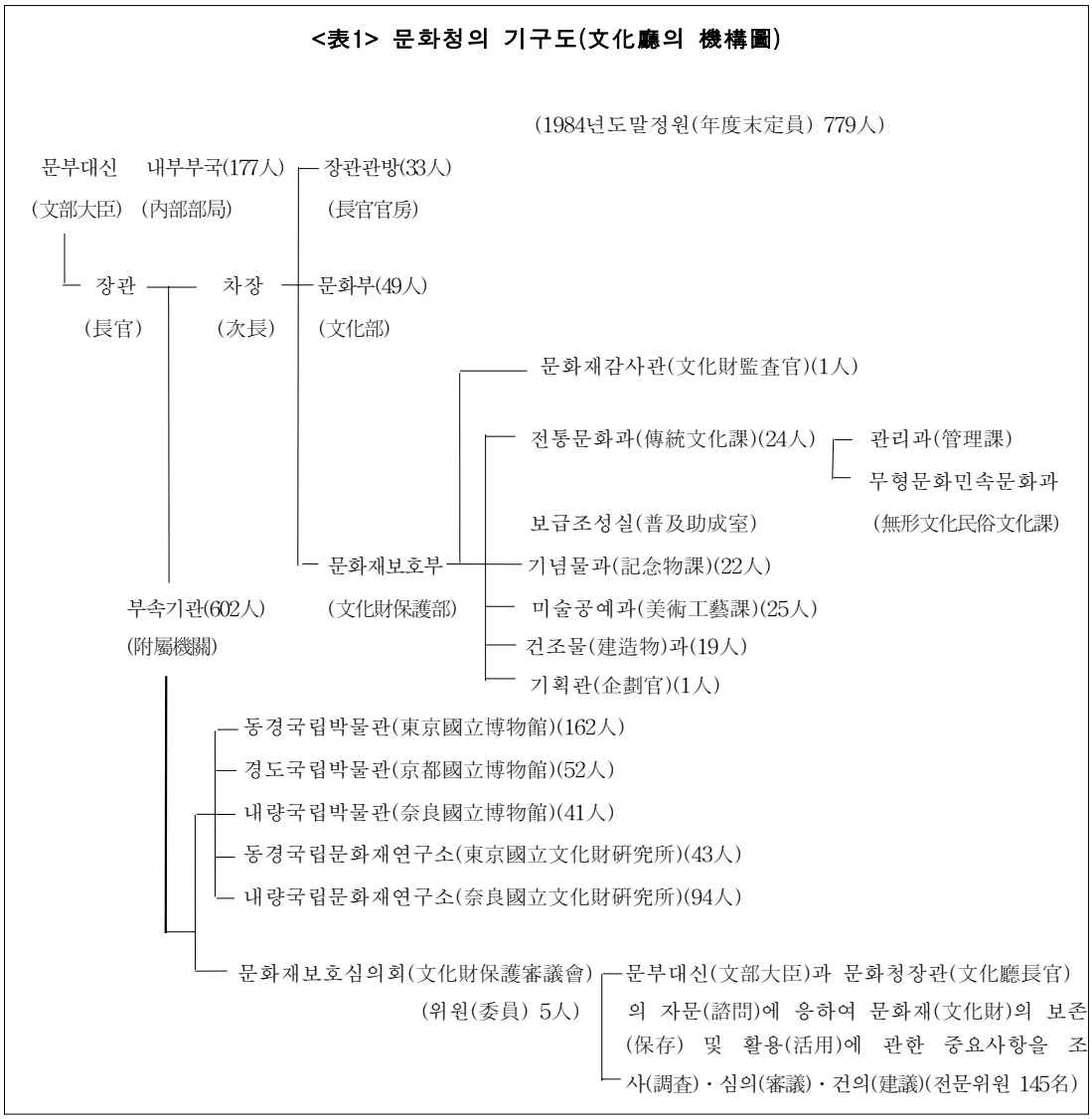

(3) 미술공예과(美術工藝課)

건조물이외(建造物以外)의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이하 “미술공예품(美術工藝品)”)를 국보(國寶)·중요문화재(重要文化財)로 지정(指定)·해제(解除)

미술공장품(美術工藏品)으로 된 중요문화재(重要文化財)의 관리(管理)·수리(修理)·미술공예품(美術工藝品)으로 된 중요문화재(重要文化財)의 보호(保護)를 위한 규제(規制).

미술공예품(美術工藝品)으로 된 중요문화재(重要文化財)의 조사(調査)·공개미술공예품(公開美術工藝品)의 보존(保存)·활용(活用)

(4)건조물과(建造物課)

건조물(建造物)로된 국보(國寶)나 중요문화재(重要文化財)의 지정(指定)·해제(解除).

관리단체(管理團體)의 지정(指定)·해제(解除).

관리(管理)·수리(修理).

현상변경(現狀變更)의 제한(制限), 기타 보호(保護)를 위한 규제(規制).

조사(調査)·공개(公開).

중요문화재(重要文化財)·중요유형민속문화재(重要有形民俗文化財)·사적명승천연기념물(史蹟名勝天然記念物)의 관리(管理)를 위한 방화시설(防火施設)

기타(其他) 보존시설(保存施設)

중요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重要傳統的建造物群保存地區)의 선정(選定)·해제(解除)·보존(保存)·활용(活用).

건조물문화재(建造物文化財)의 보존(保存)·활용(活用)

(5)무형문화민속문화과(無形文化民俗文化課)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중요유형민속문화재(重要有形民俗文化財)의 지정(指定)·해제(解除)

전승자(傳承者)의 양성(養成)과 기타 보존(保存)을 위한 조치(措置)

공개(公開)·활용(活用)

기록(記錄)의 작성(作成)

중요유형민속문화재(重要有形民俗文化財)의 관리(管理)를 위한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團體) 및 기타 법인(法人)의 지정(指定)·해제(解除).

중요유형민속문화재(重要有形民俗文化財)의 관리(管理)·수리(修理)·현상변경(現狀變更)의 허가(許可) 및 기타 규제(規制)·조사(調査).

선정보존기술(選定保存技術)의 선정(選定)·해제(解除), 기술(技術)의 보지자(保持者)·보지단체(保持團體)의 인정(認定)·해제(解除).

전승자(傳承者)의 양성(養成), 기록(記錄)의 공개(公開)·보존(保存)·활용(活用).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민속문화재(民俗文化財)로 된 문화재(文化財)의 보존(保存)기술의 보존(保存)·활용(活用).

국립극장(國立劇場)에 관한 사무(事務).

라. 문화재연구소(文化財硏究所)

문화청(文化廳)산하에 2개소(個所)의 문화재연구소(文化財硏究所)가 설치(設置)되어 문화재(文化財)의 조사(調査)·연구(硏究)와 발굴조사(發掘調査)등 중요(重要)한 기능(技能)을 수행하고 있다.

동경국립문화재연구소(東京國立文化財硏究所)는 미술(美術)·예능(藝能)에 관한 조사(調査)·연구(硏究)와 문화재(文化財)의 보존(保存)과 수복(修復)에 관한 과학적(科學的)·기술적(技術的)인 조사연구(調査硏究)를 하고, 나라(내량(奈良))국립(國立)문화연구소는 역사(歷

史)・미술(美術)・건조물(建造物)의 실물조사연구(實物調査研究)와 평성(坪城)궁적(宮跡)・아스까후지하라(비조등원(飛鳥藤原)) 궁적(宮跡)의 발굴(發掘)・조사(調査)를 실시(實施)하며 내량(奈良)문화재연구소(文化財研究所)에 있는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센터는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에 관한 조사(調査)・연구(研究)・연수(研修)・지도(指導)・조언(助言)등을 실시(實施)하고, 비조자료관(飛鳥資料館)은 비조지역(飛鳥地域)에 있는 고고학자료(古考學資料)・역사자료(歷史資料) 등의 수집(蒐集)・보관(保管)・공개(公開)・조사(調査)・연구(研究)등을 실시(實施)한다.

마. 우리나라와 비교(比較)

o 일본(日本)의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는 문부성(文部省)산하의 문화청(文化廳)에서 담당(擔當)하며, 우리나라는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이 문교부외국(文敎部外局)에서 '68年이후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외국(外局)으로 개편(改編)되었다.

o 문화재연구소(文化財研究所)가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의 산하기관이나, 일본(日本)은 문화청(文化廳)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다.

o 문화재(文化財) 1과(課)와 2과(課)로 편성(編成)되어 있으나 일본(日本)은 이를 세분(細分)하여 4개과(個課)로 운영(運營)하고 있으며, 문화청(文化廳)에서 직접(直接) 관리(管理)하는 현업부서(現業部署)가 없다.

o 우리나라는 문화재위원(文化財委員)들의 역할(役割)이 중시(重視)되는 반면, 일본(日本)은 문화재보호(文化財保護)심의회전문위원(審議會專門委員)들의 역할(役割)이 중시(重視)되고 있으며, 인원수(人員數)에 있어서는 문화재위원(文化財委員)이 29名인 반면 일본(日本)은 5名뿐이고, 전문위원(專門委員)은 65名인 반면 일본(日本)은 145名이다. 또한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가 3개(個)분과(分科)로 분류(分類)되어 있으나, 일본(日本)의 문화재보호(文化財保護)심의회(審議會)는 나누어져 있지않고 전문위원(專門委員)들로 구성(構成)된 전문조사회(專門祖師會)가 다음과 같이 5개(個)로 나누어져 있다.

<전문조사회(專門祖師會)>

제1전문조사회(第1專門祖師會) ; 건조물이외(建造物以外)의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매장문화재제외(埋藏文化財除外))에 대한 사항(事項)

제2전문조사회(第2專門祖師會) ; 건조물유형문화재(建造物有形文化財)(매장문화재제외(埋藏文化財除外)) 및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傳統的建造物群保存地區)에 관한 사항(事項) 제3전문조사회(第3專門祖師會) ; 기념물(記念物) 및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에 관한 사항(事項).

제4전문조사회(第4專門祖師會) ;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및 문화재(文化財)의 보호기술(保護技術)에 관한 사항(事項)

제5전문조사회(第5專門祖師會) ; 민속문화재(民俗文化財)(매장문화재제외(埋藏文化財除外))에 관한 사항(事項)

2. 지방관리체제(地方管理體制)

가. 일본(日本)의 지방문화재관리(地方文化財管理)는 도도부현(都道府縣))에서는 교육위원회(敎育委員會)의 문화과(文化課)(문화행정과(文化杏正果), 문화진흥과(文化進興課))에서 담당(擔當)하며, 교또・오사카・나라 등 문화유적(文化遺蹟)이 많은 11개(個) 지역(地域)은 문화재보호과(文化財保護課)(문화재과(文化財課), 문화재보존과(文化財保存課))에서 담당(擔當)하고 있다.

나. 시정촌(市町村)에서는 각 시정촌교육위원회(市町村教育委員會)에서 문화재관리업무(文化財管理業務)를 담당(擔當)하고 있다.

다. 지방공공단체문화재보호심의회(地方公共團體文化財保護審議會)는 도도부현(都道府縣) 및 시정촌별(市町村別)로 각각 문화재보호심의회(文化財保護審議會)를 두고 문화재(文化財)에 관한 자문활동(諮問活動)을 하며, 문화재보호지도위원(文化財保護指導委員)을 위촉하여 문화재보호(文化財保護)사상(思想)에 대한 보급활동과 현지지도(現地指導)점검 및 자문활동(諮問活動)을 전개(展開)한다.(表2)

<表2> 심의회 및 지도위원현황(審議會 및 指導委員現況)

(83.5.1 현재(現在))

구분(區分)	도도부현(都道府縣) (시도급(市道級)	시정촌(市町村) (시군급(市郡級))
문화재보호심의회 (文化財保護審議會)	822名(47個지역(地域))	19,143名(2,702個지역(地域))
문화재보호지도위원 (文化財保護指導委員)	1,399名(40個지역(地域))	1,385名(279個지역(地域))

라. 지방문화재관리행정체제(地方文化財管理行政體制)중에서 교또부(경도부(京都府))의 예(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o 경도부(京都府)는 교육청(教育廳)(교육위원회(教育委員會)) 지도부(指導部) 문화재보호과(文化財保護課)에서 문화재(文化財)업무(業務)를 관장하고 있으며, 자문기관(諮問機關)인 경도부(京都府)문화재보호(文化財保護)심의회(審議會)는 20名 이내(以內)의 인원(人員)으로서 5개(個) 부회(部會)로 구성(構成)되어 있다.

제1부회(第1部會) : 미술공예품(美術工藝品)

제2부회(第2部會) : 건조물(建造物)·전통적건조물군(傳統的建造物群)

제3부회(第3部會) : 사적(史蹟)·명승(名勝)·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

제4부회(第4部會) :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제5부회(第5部會) : 무형(無形)·보존기술(保存技術)·민속문화재(民俗文化財)

o 경도부(京都府)의 문화재보호지도위원(文化財保護指導委員)은 69名으로써 년간지정순시일수(年間指定巡視日數)는 7日이나, 그 이상(以上)을 순시(巡視)하면서 활동(活動)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실적(活動實績)을 보면,

유적파손(遺蹟破損) 및 유적(遺蹟)발견 등 매장문화재관련활동(埋藏文化財關聯活動) 방화시설불능발견(防火施設不能發見)등 방재활동(防災活動)

건조물(建造物)의 일부파손사항지적(一部破損事項指摘)

기타 문화재(文化財)에 대한 설명회(說明會)·강연회(講演會)의 강사(講師)로써 활동(活動)하거나, 견학회(見學會)·설명회(說明會)·방화훈련(防火訓練)과 간담회(懇談會)등에 참가(參加)하여 문화재보급활동(文化財普及活動)을 전개(展開)하고 문화재(文化財)애호사상을 고취시킨다.

o 경도부산하(京都府傘下) 행정관청(行政官廳)인 경도시(京都市)는 문화관광(文化觀光)국 문화재보호과(文化財保護課)에서 담당(擔當)하며, 기타 산하(傘下) 시정촌(市町村)(9시(市)·14정(町)·1촌(村))에서는 각시정촌(各市町村) 교육위원회(教育委員會)에서 업무(業務)를 담당(擔當)하고 있다.

o 경도부교육위원회(京都府教育委員會) 문화재보호과(文化財保護課)의 조직(組織)은 다음과 같이 5개(個)계(係)로 나누어져 문화재관리업무(文化財管理業務)를 담당(擔當)하고 있다.

서무계(庶務係)

수리계(修理契)(건조물(建造物)의 보호(保護)·수리(修理)·조사(調査), 전통건조물군(傳統建造物群)

방재계(防災係)(문화재방재(文化財防災)의 총괄에 관한 사항(事項), 건조물(建造物)등 방재(防災)에 관한 사항(事項))

관리조사계(管理調査係)(문화재보호(文化財保護)심의회(審議會) 지도위원(指導委員), 미술공예(美術工藝)·무형(無形)·민속문화재(民俗文化財)의 보호(保護)·공개(公開)·조사(調査), 보존기술자(保存技術者), 국고보조(國庫補助)업무총괄, 보급사업(普及事業))

기념물계(記念物係)(기념물(記念物)·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

마. 우리나라와 비교(比較)

o 일본(日本)의 지방문화재관리(地方文化財管理)체제(體制)는 교육위원회(教育委員會)에서 담당(擔當)하고 시정촌(市町村)(시군단위(市郡單位))까지 문화재지정(文化財指定)관리체제(管理體制)가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시도단위(市道單位)까지만 지정관리체제(指定管理體制)가 되어 있다.

o 따라서 우리나라는 시도단위(市道單位)까지만 문화재(文化財)자문기구가 있으나, 일본(日本)은 시도급(市道級)(도도부현(都道府縣))뿐만아니라, 시군급(市郡級)(시정촌(市町村))까지 문화재보호심의회(文化財保護審議會)가 자문기구(諮問機構)로 설치(設置)되어 있다.

o 우리나라에는 시도(市道)·시군(市郡)·읍면단위(邑面單位)까지 문화재(文化財)점검관리체계(點檢管理體系)가 되어 있으며, 일본(日本)은 시도(市道)·시군단위(市郡單位)에 문화재보호지도위원(文化財保護指導委員)을 위촉하여 문화재현장점검(文化財現場點檢)과 지도활동(指導活動) 및 보우선양활동(普友宣揚活動)을 전개(展開)하고 있다.

o 경도부청(京都府廳) 교육위원회(教育委員會) 문화재보호과(文化財保護課)에는 방재계(防災係)가 편성(編成)되어 있어 화재(火災)등 각종(各種) 재란(災亂)에 대한 예방대비체제(豫防對備體制)가 잘 되어 있다.

3. 일본(日本)의 문화재관계법령(文化財關係法令)

가. 1897年(명치(明治) 30年) 6月 5日 ; 고사사(古社寺)의 건조물(建造物)과 보물류(寶物類)를 보호(保護)하기 위하여 "고사사보존법(古社寺保存法)"을 제정(制定)하였다.

나. 1916年(대정(大正)8年)4月 10日 ; 유적(遺蹟)과 동식물등(動植物等)의 보호(保護)에 관한 지정(指定)·가지정제도(假指定制度)·현상변경허가(現狀變更許可)·환경(環境)보존(保存)등(等)을 규정(規定)한 "사적명승천연기념물(史蹟名勝天然記念物)보존법(保存法)"을 제정(制定)하였다.

다. 1929年(소화(昭和)4年) 3月 28日 ; "국보보존법(國寶保存法)"을 제정(制定)하여 국보(國寶)의 보존범위(保存範圍)를 "지정(指定)"에 의해 한정(限定)하고, 고사사(古社寺)이외의 공유(公有) 및 개인소유(個人所有)에 대해서도 국보(國寶)로 지정(指定)·보호조치(保護措置)를 하고 공개의무(公開義務)를 규정(規定)하였다.

라. 1933年 4月 1日 ; "중요미술품(重要美術品)등(等)의 보존(保存)에 관한 법률(法律)"을 제정(制定)하여 국보이외(國寶以外)의 중요미술품(重要美術品)이라고 인정(認定)되는 물건(物

件)을 문부대신(文部大臣)의 허가(許可)를 받아 수출하게 하였다.

마. 1950年 5月 30日 ; 第2차(次) 세계대전후(世界大戰後) 일본(日本)의 사회적(社會的)·경제적(經濟的) 혼란과 궁핍은 문화재보호(文化財保護)에 위기(危機)를 가져 왔으며, 1949年 1月 26日 법륭사(法隆寺) 금당화재(金堂火災)로 일본(日本) 최대(最大)의 귀중한 문화재(文化財)라고 자랑하던 벽화가 소실되자 문화재보존(文化財保存)의 여론이 급속도로 높아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을 제정(制定)하게 되었고, 과거(過去)의 "국보보존법(國寶保存法)", "중요미술품(重要美術品)등(等)의 보존(保存)에 관한 법률(法律), 사적명승천연기념물(史蹟名勝天然記念物)보존법(保存法)"을 발전적(發展的)으로 흡수(吸收)·폐지(廢止)하였다.

바. 1954年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의 일부(一部)를 개정(改正)하였으나 시행(施行)에 문제가 있어 1975年 7月 1日 대폭 개정(改正)하였으며, 주요개정내용(主要改正內容)은 다음 5가지이다.

민속문화재(民俗文化財)의 제도(制度)의 정비(整備)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에 관한 제도(制度)의 정비(整備)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제도(傳統的建造物群保存地區制度)의 신설(新設)

문화재(文化財)의 보존기술(保存技術)의 보호제도(保護制度)의 신설(新設)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團體)의 행정체제(行政體制)의 정비(整備)

사. 우리나라와 비교

우리나라의 문화재관계법(文化財關係法)은 일제시대(日帝時代)인 1916年 7月에 조선총독부령제 52호로 "고적급유물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이 제정(制定)되었으며, 그 후 1933年 8月 9日 조선총독부령제 6호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 제정(制定)되었고, 1962年에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이 제정(制定)·공포(公布)됨으로써 문화재관리체제(文化財管理體制)가 확립(確立)되었다. 법제정후(法制定後)에도 6차례의 소폭적인 개정(改正)과 2차례의 대폭적인 개정(改正)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文化財保護)관리체계(管理體系)는 일본(日本)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4. 일본(日本)의 문화재(文化財)

가. 문화재(文化財)의 지정(指定)

(1)일본(日本)은 문화재(文化財)를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민속문화재(民俗文化財)·기념물(記念物)·전통적(傳統的)건조물(建造物)군(群)등 5가지로 분류(分類)하여 지정(指定)하고 있다.(表3)

(2)우리나라와 비교(比較)

o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는 국보(國寶)·보물(寶物)로 구분(區分)하여 지정(指定)하나, 일본(日本)은 보물(寶物)을 중요문화재(重要文化財)라 칭한다.

o 민속문화재(民俗文化財)를 유형(有形)의 것과 무형(無形)의 것으로 구분(區分)하여 지정(指定)·보호(保護)·관리(管理)하고 있다.

o 일본(日本)은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와 중요무형민속문화재(重要無形民俗文化財)이외(以外)의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중 특(特)히 필요(必要)한 것을 선택하여 스스로 그 기록(記錄)을 작성(作成)·보존(保存)또는 공개(公開)等의 조치(措置)를 하고 있다.

o 기념물(記念物)은 사적(史蹟)·명승(名勝)·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로 지정(指定)하고 특

히 중요(重要)한 것은 특별(特別)사적(史蹟)·특별명승(特別名勝)·특별(特別)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로 지정(指定)하고 있다.

o 전통적건조물군(傳統的建造物群)의 보호(保護)를 위하여 시정촌(市町村)에서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傳統的建造物群保存地區)로 결정(決定)하고, 그 중 중요(重要)한 것을 중요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重要傳統的建造物群保存地區)로 선정(選定)하여 보존(保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건조물보호법(傳統建造物保護法)을 제정(制定)하여 대책(對策)을 강구중에 있다.

<表3> 문화재의 종류 및 보호체계(文化財의 種類 및 保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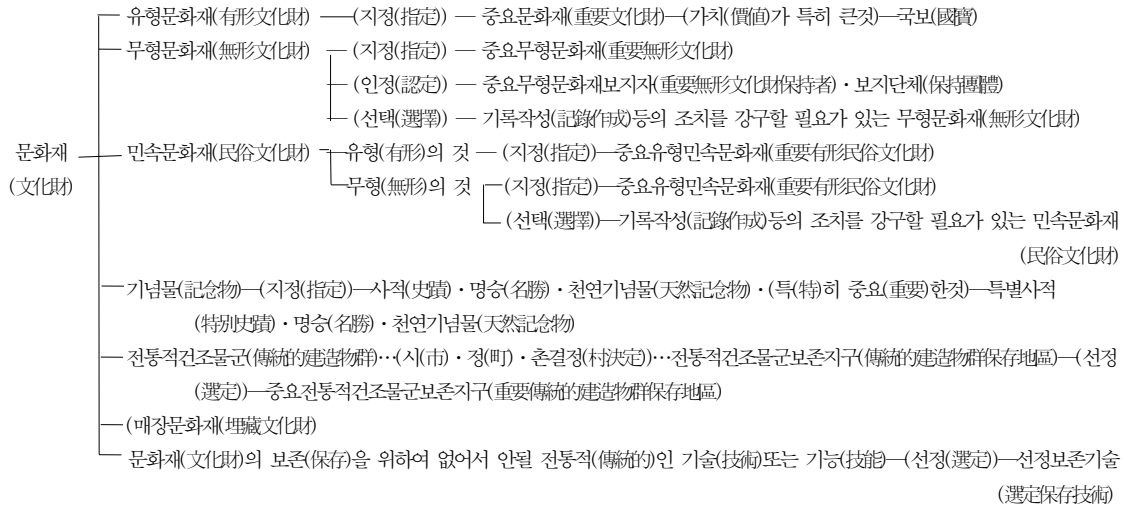

o 또한 문화재(文化財)의 보존(保存)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되는 전통적(傳統的)인 기술(技術)과 기능(技能)을 "선정보존기술(選定保存技術)"로 선정(選定)하여 보호(保護)하고 있으며 보지자(保持者) 또는 보지단체(保持團體)를 인정(認定)하여 보호(保護)하고 있다.

나.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

(1) 국보·중요문화재(國寶·重要文化財)의 지정현황(指定現況)(表4)

<表4> 국보·중요문화재 지정현황(國寶·重要文化財 指定現況)

('84.4.1 현재(現在))

종별 / 구분	미술공예품							건조물	합계
	회화	조각	공예품	서적	고고자료	역사자료	계		
국보(國寶)	151	115	250	273	36	0	825	207(249동)	1,032
중요문화재(重要文化財)	1,774	2,462	2,253	2,325	387	23	9,224	1,965(3,174동)	11,189

※중요문화재건수(重要文化財件數)에는 국보(國寶)의 건수(件數)가 포함되없음

o 우리나라는 국보(國寶) 209건(件)과 보물(寶物) 748건(件)이 지정(指定)되었다.

(2)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지정현황(史蹟·名勝·天然記念物의 指定現況)

('84.4.1현재(現在))

특별사적(特別史蹟)	56	사적(史蹟)	1,202
특별명승(特別名勝)	24	명승(名勝)	245
특별천연기념물(特別天然記念物)	73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917
계(計)	건(件)153	계(計)	건(件)2,364

※사적(史蹟)·명승(名勝)·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의 건수(件數)에는 특별사적(特別史蹟)·명승(名勝)·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의 건수(件數)가 포함(包含)되었음.

o 우리나라는 사적(史蹟) 300건(件), 사적(史蹟) 및 명승(名勝) 5건(件),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252건(件)이 지정(指定)되었으나, 명승(名勝)은 7건(件)밖에 지정(指定)되지 않았다.

o 일본(日本)의 명승(名勝)은 정원(庭園)이 50%를 차지하며, 협곡계류·산악·해안·동굴·폭포·화수·전망지점등 여러가지 형태(形態)가 지정(指定)되어 보호(保護)하고 있다.

(3) 중요무형문화재 지정현황(重要無形文化財 指定現況)

('84.4.23 현재(現在))

구분(區分)	보지자(保持者)				보지단체(保持團體)	
	각개지정(各個指定)		통합지정(統合指定)			
예능(藝能)	24건,	35인	7건	7단체	0	0
공예기술(工藝技術)	28건	35(33)	0	0	11	11
계(計)	52건	70(68)	7건	7단체	11건(件)	11단체

※공예기술(工藝技術)의 보지자(保持者)(각개지정(各個指定))는 중복인정(重複認定)이 있음. ( )내(內)는 실인원(實人員)

우리나라의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는 77종(種)에 160명(名)의 보유자(保有者)와 20名의 보유자후보(保有者候補)가 지정(指定)(인정(認定))되어 있다.

(4) 민속문화재(民俗文化財)

o 중요유형민속문화재(重要有形民俗文化財) ; 149건(件)

산업(産業)·생업용(生業用)이 약 40%를 차지하며 의식주(衣食住)·생활용구(生活用具)·신앙용구(信仰用具)가 많다.

o 중요무형민속문화재(重要無形民俗文化財) ; 121건(件)

민속예능(民俗藝能)이 110건(件)이고, 풍속(風俗)·관습(慣習)·이 11건(件)이다.

o 우리나라는 중요민속자료(重要民俗資料)를 188건(件) 지정(指定)하였다.

(5)선정현황(選定現況)

o 일본(日本)은 중요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重要傳統的建造物群保存地區)를 선정(選定)하여 보존(保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지정(指定)하지 않고 있다.

o 선정보존기술(選定保存技術)

('84.4.1현재(現在))

구분(區分) / 문화재명(文化財名)	보지자(保持者)		보존단체(保存團體)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12건	13인	6건	6단체(4)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13건	17인	6건	6단체
계(計)	25건	30인	12건	12단체(10)

※보존단체(保存團體)중복인정(重複認定) ; ( )는 실단체수(實團體數)

우리나라는 "선정보유기술(選定保有技術)"을 선정(選定)하여 보호(保護)하고 있지 않다.

다.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團體)의 문화재지정(文化財指定)

(1)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團體)는 당해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조례(條例)가 정(定)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都道府縣)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와 시정촌지정문화재(市町村指定文化財)를 지정(指定)하고, 문화청장관(文化廳長官)에게 지정취지(指定趣旨)를 보고(報告)하며 보존(保存) 및 활용조치(活用措置)를 강구한다.

(2)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團體)의 문화재지정현황(文化財指定現況)

('83.5.1현재(現在))

구분(區分) / 문화재명(文化財名)		도도부현지정문화재 (都道府縣指定文化財)	시정촌지정문화재 (市町村指定文化財)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8,530	26,325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160	799
민속문화재(民俗文化財)	유형(有形)	503	3,306
	무형(無形)	1,135	2,989
기념물(記念物)	사적(史跡)	2,228	9,477
	명승(名勝)	192	704
	천연기념물 (天然記念物)	2,576	7,617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傳統的建造物群保存地區)		0	20
보존기술(保存技術)		2	43
계(計)		15,326	51,280

(3) 일본(日本)의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團體)의 문화재지정(文化財指定)·보존활동(保存活動)은 활발하고 보호관리체계(保護管理體系)가 잘 확립(確立)되어 있다.

라.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의 소유자(所有者)와의 관계(關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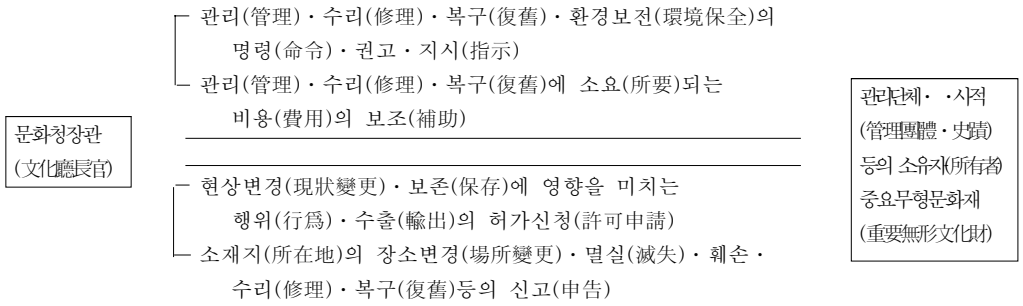

마. 일본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현황(日本國家指定文化財 管理團體 指定現況)

('84.4.1현재(現在))

o 중요문화재(重要文化財)(미술공예품·건조물(美術工藝品·建造物)) 사적(史蹟)·명승(名勝)·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중요유형민속문화재(重要有形民俗文化財) — 지정건수(指定件數) 13,702건(件)

※관리건수(管理件數) ; 1,710건(件)(12.5%)

o 관리단체수(管理團體數) ; 1,327건(件)

- 도도부현(都道府縣) ; 124건(件)
- 시 정 촌(市 町 村) ; 1,167건(件)
- 법인(法人) ; 36건(件)

바. 일본(日本)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의 소유자(所有者) 현황(現況)을 살펴보면, 대상문화재(對象文化財) 12,547건(件)('84.4.1현재(現在))중 국가(國家) 1,151건(件)(9.2%),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團體) 577건(件)(4.6%), 신사(神社) 1.894건(件)(15.1%), 사원(寺院) 5,713건(件)(45,5%), 기타 법인(法人) 1,405건(件)(11.2%), 개인(個人) 1,735건(件)(13.8%), 기타 82건(件)(0.7%)으로써 신사(神社)와 사원(寺院)이 60%이상(以上)을 점(占)하고 있으며, 국가(國家) 및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團體)의 소유(所有)는 13.6%에 불과하여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재(文化財)의 공유화(公有化)에 힘쓰고 있다.

5. 일본(日本)의 문화재보호예산(文化財保護豫算)

가. 일본(日本)의 문화재보존사업예산(文化財保存事業豫算)은 직영사업비(直營事業費)와 국고보조사업비(國庫補助事業費)로 구분(區分)되며, 직영사업비(直營事業費)의 상당부분(相當部分)이 국보(國寶)·중요문화재(重要文化財)등 매입비(買入費)와 평성비조등원궁적(平城飛鳥藤原宮跡)의 매입비(買入費)로서 32억(億)엔중 29억(億)엔을 차지하고 있다.

나.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중 건조물예산(建造物豫算)의 80%가 보존수리비(保存修理費)이고, 화재예방(火災豫防)등 방재시설비(防災施設費)가 20%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화재(火災)등 재란방지시설(災亂防止施設)을 매우 중시(重視)하고 있다.

다. 미술공예품(美術工藝品)의 경우는 예산(豫算)의 약40%가 보존수리예산(保存修理豫算)으로써 동산문화재(動産文化財)보존(保存)처리(處理)도 활발히 추진(推進)하고 있다.

라. 사적(史蹟)·명승(名勝)·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등 기념물보호(記念物保護)는 87억(億)엔의 예산(豫算)중 80%이상에 해당하는 예산(豫算)이 사적(史蹟)등의 매입(買入)에 사용(使用)되며, 약 15%가 보존(保存)수리(修理)에 사용(使用)되어 문화재관리사업(文化財管理事業)에 있어 토지매입(土地買入)등이 차지하는 비중(比重)이 매우 높다.

마. 또한 매장문화재관리예산(埋藏文化財管理豫算)도 문화재보존사업예산(文化財保存事業豫算) 전체(全體)의 10%에 해당하는 약 19억(億) 5천만(千萬)엔으로써 발굴업무(發掘業務)도 적극 추진(推進)하고 있었다.

6. 고도(古都)에 있어서 역사적 풍토(歷史的 風土)의 보존(保存)

가. 보존목적(保存目的)

일본(日本)은 1971年 5月 31日 고도(古都)에 있어서 "역사적풍토(歷史的風土)의 보존(保存)에 관한 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을 제정(制定)하여 일본고유(日本固有)의 문화적(文化的) 자산(資産)으로서 국민(國民)이 다 같이 그 혜택을 향유(享有)하며, 후대의 국민(國民)에게 계승시켜야 할 고도(古都)에 있어서 역사적풍토(歷史的風土)를 보존(保存)하여 국토애(國土愛)를 고양(高揚)시키는 자료(資料)로 활용(活用)하고, 문화(文化)의 향상(向上)·발전(發展)에 기여하는 것에 그 목적(目的)을 두고 있다.

나. 보존방법(保存方法)

일본(日本)의 고도(古都)에 있어서 역사적풍토(歷史的風土)의 보존(保存)이라함은 우리나라의 경주(慶州)·부여(扶餘)·공주(公州)와 같은 고도(古都)를 보존(保存)한다는 개념(槪念)이며, "고도(古都)"란 옛날의 정치문화(政治文化)의 중심지(中心地)인 경도시(京都市)·내량

시(奈良市)・겸창시(鎌倉市) 및 정령(政令)에서 정하는 시정촌(市町村)을 말하고, “역사적풍토(歷史的風土)”란 역사적(歷史的) 의의(意義)를 가진 건조물(建造物)・유적(遺蹟)등이 주위의 자연적(自然的)환경(環境)과 일체를 이루어 고도(古都)에 있어서 전통(傳統)과 문화(文化)를 구현(具現)하여 형성(形成)하고 있는 토지(土地)의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 “역사적풍토보존구역(歷史的風土保存區域)”은 내각총리대신이 관계지방공공단체 및 역사적풍토심의회의의 의견(意見)을 듣고 관계행정기관(關係行政機關)의 장(長)에게 협의(協議)하여 이 중 중요(重要)한 부분(部分)을 “역사적풍토특별보존지구(歷史的風土特別保存地區)”로 지정(指定)・보호(保護)하는 것이다.

다. 지정현황(指定現況)

경도시(京都市) ; 8개구역(8個區域)(12개특별보존지구(12個特別保存地區))

내량시(奈良市) : 3개구역(3個區域)(5개특별보존지구(12個特別保存地區))

겸식시(鎌食市) ; 5개구역(5個區域)(10개특별보존지구(12個特別保存地區))

기　　타 ; 5개구역(5個區域)(7개특별보존지구(12個特別保存地區))

계(計)　　; 21개구역(21個區域)(34개특별보존지구(12個特別保存地區))

7. 문화재관계사업(文化財關係事業) 국고보조율(國庫補助率)

가. 국보(國寶)・중요문화재(重要文化財)등 보존정비비보조금(保存整備費補助金)(表5)

<表5> 국보・중요문화재등 보존정비비보조금(國寶・重要文化財等 保存整備費補助金)

구분(區分)	보조내용(補助內容)	보조사업자(補助事業者)	보조율(補助率)
(1)건조물(建造物)	o 조사(調査)(근세사사건축긴급조사(近世社寺建築緊急調査))	도도부현(都道府縣)	50%
	o 보존수리(保存修理)	소유자(所有者)(관리단체(管理團體))	50%이상(以上)
	o 방재시설(防災施設)등(방재사업・환경보전・민가보존관리시설(防災事業・環境保全・民家保存管理施設)	소유자(所有者)(관리단체(管理團體))	50%이상(以上)
	o 매상(買上)(민가등매입(民家等買入)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團體)	50%
(2)미술공예품(美術工藝品)	o 조사(調査)(고문서・역사자료(古文書・歷史資料))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團體)	50%
	o 보존수리(保存修理)	소유자(所有者)(관리단체(管理團體))	50%이상(以上)
	o 방재시설(防災施設)	소유자(所有者)(관리단체(管理團體))	50%이상(以上)
(3)기념물(記念物)	o 조사등(調査等)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團體)	50%
	o 보존수리(保存修理)	소유자・관리자・지방공공단체(所有者・管理者・地方公共團體)	50%
	o 방재시설(防災施設)	소유자・관리단체(所有者・管理團體)	50%
	o 보호・증식(保護・增植)	소유자・관리단체(所有者・管理團體)	50%
(4)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	o 발굴조사(發掘調査)와 출토유물보존처리(出土遺物保存處理) 등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團體)	50%
(5)전통적건조물군(傳統的建造物群)	o 조사・보존처리・방재시설(調査・保存處理・防災施設)等	시정촌(市町村)	50%
(6)관리비(管理費)等	o 국유문화재관리(國有文化財管理)	관리단체(管理團體)	80%
	o 지정문화재관리(指定文化財管理)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團體)	50%
(7)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o 공개(公開)	보지단체・지방공공단체(保持團體・地方公共團體)	정액(定額)
(8)민속문화재(民俗文化財)	o 조사(調査)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團體)	50%
	o 수리・방재(修理・防災)	소유자(所有者)(관리단체(管理團體))	50%
	o 전승(傳承)	지방공공단체・관리단체(地方公共團體・管理團體)등	정액(定額)
	o 공개(公開)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團體)	정액(定額)
(9)문화재보존기술(文化財保存技術)	o 전승(傳承)	보존단체・개인(保存團體・個人)	정액(定額)

나. 국보・중요문화재등 보존시설정비비 보조금(國寶・重要文化財等 保存施設整備費 補助金)

국비(國費)・중요문화재(重要文化財)・미술공예품(美術工藝品)등 문화재보존시설사업(文化財保存施設事業)에 대해서는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團體)나 기타단체(其他團體)에 50%이상(以上) 보조(補助)하며,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의 출토품(出土品)등 정리(整理)・연구(硏究)・보관(保管) 및 관내발굴조사시설(棺內發掘調査施設)의 건설(建設)사업(事業)은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團體)에 정액보조(淨液補助)를 하고 있다.

다. 사적(史蹟)등 구입비 보조금(購入費 補助金)

민가소유지(民家所有地)로 된 사적(史蹟)・명승(名勝)・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의 개발(開發)등 항구적(恒久的)인 보존(保存)을 위하여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團體)가 사적(史蹟)등의 토지(土地)・건물(建物)・입목(立木)을 매입(買入)하는 경우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團體)에 80%를 보조(補助)하고 있다.

라. 우리나라와 비교

우리나라의 문화재(文化財)에 대(對)한 국고보조율(國庫補助率)은 문화재보수(文化財補修) 및 토지(土地)・민가(民家)의 매입(買入)등 국가지정(國家指定)문화재(文化財)의 경우 70%를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에 보조(補助)하여 30%의 지방비(地方費)를 부담(負擔)시키고 시(市)·도(道)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와 문화재자료이하(文化財資料以下)에 대해서는 필요시(必要時) 50%의 국비(國費)를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에 보조(補助)하며 다만,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에 대해서는 일정액(一定額)을 국가(國家)가 보조(補助)한다.

8. 일본(日本)의 문화재보급선양사업(文化財普及宣揚事業)

가. 문화재보호강조주간(文化財保護强調週間)

1954年 11月 3日 법륭사금당(法隆寺金堂)의 준공식(竣工式)을 계기로 11月 1日부터 11月 7日의 기간(期間)을 문화재보호강조주간(文化財保護强調週間)으로 설정(設定)하여 1954年이후 매년(每年) 전국적(全國的)으로 실시(實施)하고 있다.

나. 문화재(文化財)방화훈련(防火訓練)

1949年 1月 26日 법륭사금당화재(法隆寺金堂火災)가 발생(發生)하자 이날을 잊지않기 위하여 1955年부터 매년(每年) 1月 26日에 전국적(全國的)으로 문화재(文化財)방화훈련(防火訓練)을 실시(實施)한다.

다. 문화재보급사업(文化財普及事業)

o 교육위원회 공보매체활용(敎育委員會 公報媒體活用)·보도관계자료제공(報道關係資料提供)

o 문화재영화제작(文化財映畵製作)·문화재도록발간(文化財圖錄發刊)등책자발간(冊子發刊)

o 문화재애호강좌(文化財愛護講座)·영화방영(映畵放映)·출품(出品)·공연(公演)

o 문화재소유자(文化財所有者)(관리자(管理者))연락협의회이용 매년 2시간(時間)(10시-12시)지역별(地域別)강연 문화재보호현장교육(文化財保護現狀敎育)·교육(敎育)·협의(協議)·영화상영·방화교육(防火敎育)·관내견학(管內見學)·문화재보호(文化財保護)상담(相談)

o 매년(每年) 문화재보호강조주간(文化財保護强調週間)포스터·포어·전단등을 제작하여 소유자(所有者)(관리자(管理者))·행정기관(行政機關)·학교(學校)등에 배포.

o 매년(每年) 초·중·고등학교 교직원(敎職員)·문화재보호행정(文化財保護行政)관계직원(關係職員)·문화재보호지도위원(文化財保護指導委員)·기타관계자에 대한 문화재보호강좌실시(文化財保護講座實施)

o 문화재애호모범지구(文化財愛護模範地區)를 도도부현(都道府縣)에 각 1개소(個所)씩 2年 1회(回) 선정(選定).

o 문화재관계영화(文化財關係映畵)·TV방영(放映)

9. 일본(日本)의 문화재연구소(文化財硏究所)

가. 동경국립문화재연구소(東京國立文化財硏究所)

동경국립문화재연구소(東京國立文化財硏究所)는 1930年에 설립(設立)된 제국미술원(帝國美術院) 미술연구소(美術硏究所)가 전신이며, 조직(組織)은 1과(課), 5부(部)로 되어있고 서무과(庶務課)는 서무계, 경리계이며, 5부(部)는 미술부(美術部)·예능부(藝能部)·보존과학부(保存科學部)·수복기술부(修復技術部)·정보자료부(情報資料部)로 구성되어 있다.

미술부(美術部)는 일본(日本)과 동양(東洋)의 고미술(古美術)을 조사(調査)·연구(硏究)하는 第1연구실(硏究室)과 명치(明治)이후 일본근대미술(日本近代美術)을 조사(調査)·연구(硏究)하는 第2연구실(硏究室)이 있다.

예능부(藝能部)는 연극연구실・음악무용실・민속예능실로 구분되어 있다.

보존과학부(保存科學部)는 화학연구실・물리연구실・생물연구실이 있다.

수복기술부(修復技術部)는 3개의 연구실이 있다.

정보자료부(情報資料部)는 문헌자료실과 사진자료실로 나누어져 문헌외에 연구용(研究用) 사진(寫眞)자료(資料)를 작성(作成)・수집(蒐集)・정리(整理)・보관(保管)・열람(閱覽)등의 업무(業務)를 수행한다.

<表6> 문화재연구시설등수(文化財研究施設等數)

('82.1.1현재)

설치자(設置者) / 구분(區分)	공립(公立)			사립(私立)				합계(合計)
	도도부현(都道府縣)	시정촌(市町村)	소계	재단법인(財團法人)	사단법인(社團法人)	기타	소계(小計)	
문화재연구소(文化財研究所)	7	0	7	15	1	0	16	23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조사단(調査團)	10	5	15	9	0	0	9	24
문화재보존시설(文化財保存施設)	1(3)	19(40)	20(43)	8(4)	0(0)	531(9)	539(13)	559(56)

※(　)내는 민속문화재관계시설수(民俗文化財關係施設數)

나. 내량국립문화재연구소(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내량국립문화재연구소(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는 1952年 문화재보호위원회(文化財保護委員會)(현 문화청(文化廳))의 부속기관으로 설립(設立)되어, 1960年 평성(平城)궁적발굴조사사무소(宮跡發掘調査事務所)를 설치(設置)하였고, 1970年 비조등원궁적조사실(飛鳥藤原宮跡調査室)을 설치(設置)하였으며, 조직(組織)은 서무부(庶務部)・건조물연구실(建造物研究室)・역사연구실(歷史研究室)・평성궁적발굴조사부(平城宮跡發掘調査部)・비조등원궁적발굴조사부(飛鳥藤原宮跡發掘調査部)・비조자료실(飛鳥資料室)・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센터로 구성되어 있다.(表6)

10. 일본문화재관리실태(日本文化財管理實態)

가. 일본(日本)의 문화재(文化財)는 훌륭한 것이 많았으며, 그 관리상태(管理狀態)는 섬세하게 전반적(全般的)으로 잘 되어 있었다.

나. 문화재지역(文化財地域)은 대부분 당해 문화재(文化財)의 보존관리(保存管理)에 사용(使用)하기 위하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관람료(觀覽料)는 대부분(大部分) 대인(大人)과 소인(小人), 그리고 단체(團體)로 구분(區分)하였고 대인(大人)은 고등학생이상(高等學生以上)을 말하며 어떤 지역(地域)은 대인(大人)・학생(學生)・소인(小人)으로 구분(區分)한 것도 있었다.

관람권(觀覽券)은 통일(統一)되어 있지 않고 문화재지역(文化財地域)마다 자유롭게 고안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문화재(文化財)에 관한 사진 또는 그림이 인쇄되어 있고 간단한 연혁(沿革)과 관람동선(觀覽動線)등을 표시(表示)하였다.

다. 문화재(文化財)의 관람권(觀覽券)판매소나 출입구(出入口)수표소에는 간단한 안내유인물(案內油印物)을 비치하여 무료배포함으로써 관람객이 당해문화재(當該文化財)를 관람(觀

覽)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주의사항(注意事項)·관람동선(觀覽動線)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넓은 지역(地域)을 이리저리 헤메지 않고 그 동선(動線)만 따라가면 모든 문화재(文化財)를 보고 나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문(英文)으로 번역된 안내유인물도 비치하여 외국인관람객(外國人觀覽客)의 편의(便宜)를 도모하고 있었다.

라. 문화재안내판(文化財案內板)을 비롯하여 각종 표지판은 다양한 형태(形態)로 제작(製作)하여 눈에 잘 띄고 선명하게 세워져 있었으며 관람동선(觀覽動線)표식판(標識板)도 빠짐없이 세워져 있었다.

관람로(觀覽路)는 토질(土質)과 비슷한 왕모래를 깔아 걷는 감촉이 부드럽고 우천시 배수가 잘 되며 흙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하였다.

마. 문화재지역(文化財地域)의 화장실은 완전 수세식(水洗式)이고 주위의 경관과 조화(調和)를 이루도록 설치(設置)되어 있었으며, 숲이 우거진 곳은 도로(道路)에서 약 10 여미터 정도 숲속으로 들어가 설치(設置)되어 있었다. 특히 필요(必要)에 따라 어린이용, 불구자용까지 설치(設置)한 곳이 많았고 각종 표지는 선명하였다.

바. 일본(日本)의 문화재지역(文化財地域)은 매표소등 곳곳에 매점을 설치(設置)하여 당해 문화재(當該文化財)에 관한 팜프렛·카드·기념품등을 개발(開發)하여 판매함으로써 문화재보급(文化財普及)선양활동효과(宣揚活動效果) 뿐 아니라 세입증대효과(歲入增大效果)를 올리는 경향이 많았으며, 문화재방문기념(文化財訪問記念) 스템프를 비치하여 자유롭게 찍도록 함으로써 관람자(觀覽者)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였다.

또한 일부지역은 일본전통(日本傳統)의 특이(特異)한 복장을 입고 입장권(入場券) 또는 기념품(記念品)을 판매함으로써 이색적인 느낌을 갖게 하였다.

사. 일본(日本)은 문화재(文化財)의 화재예방시설(火災豫防施設)에 많은 투자(投資)를 하고 있었다. 문화재관리예산(文化財管理豫算)에는 방재예산(防災豫算)을 반드시 포함하여 방재시설(防災施設)을 보강하고 있었으며, 최근 1972年부터 실시(實施)한 사업(事業)중 동대사(東大寺)·법륭사(法隆寺)등 20개 주요건조물문화재(主要建造物文化財)는 소화시설(消火施設)(소화전(消火栓))·피뢰시설·자동화재경보시설(自動火災警報施設)·저수조(貯水槽)뿐만 아니라 방범시설(防犯施設)등을 설치하여 완벽한 예방체제를 갖추었다.

특(特)히 관심있게 보았던 사항은 목조건조물문화재(木造建造物文化財)에는 완벽한 방재시설(防災施設)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양동이를 여러개 준비하여 기둥마다 소화기(消火器)와 함께 물양동이를 곳곳에 비치함으로써 긴급할 때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명치촌(明治村)의 경우는 소방훈련을 月 1회(回) 전직원(全職員)이 참여하며 실시(實施)하고 있었다. 사찰이나 사원에서 촛불을 사용하고 있으나 촛불을 많이 사용하는 문화재(文化財)는 유리상자를 마련하여 그 속에 양초를 꽂도록 하고있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하였다. 숲 속은 입산(入山)을 금지시키고 문화재지역(文化財地域)에서는 휴게소등 특정지역(特定地域)을 제외하고는 절대적으로 “금연(禁煙)”시키고 있었다.

아. 문화재수리(文化財修理)·복원공사(復元工事)에는 덧집을 씌워 그 속에서 공사를 함으로써 전천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特)히 기왓장의 조달은 관람객(觀覽客)들로부터 구매(購買)토록하여 관람객(觀覽客)의 이름을 새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리공사(修理工事)등에 그 기와를 사용하여 많은 효과(效果)를 거두는 것은 좋은 착상이었다.

자. 문화재(文化財)가 밀집되어 있는 박물관(博物館)이나 전시장(展示場) 또는 국보(國寶)등의 문화재(文化財)에 대해서는 사진촬영(寫眞撮影)을 철저히 금지(禁止)하고 있었다.

차. 문화재지역(文化財地域)주변의 상가는 가격표시(價格表示)와 위생적처리가 잘 되어 있

었고, 일본인(日本人)들은 행운을 점치는 종이를 사서보는 사람이 많았다. 또한 사찰이나 사원등을 관람(觀覽)하다가 불상같은 것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참배(參拜)하고 동전등을 투입하는 습성이 있어 사찰(寺刹)등 문화재수입증대(文化財輸入增大)에 도움이 되고 있었다.

일본(日本)의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는 문화재(文化財)의 보존보호(保存保護)에 치중하는 한편 이것을 최대한 개발(開發)하고 활용(活用)하여 국내외(國內外) 관람객(觀覽客)에게 홍보(弘報)하고 수입(收入)을 올릴 수 있게 하였으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관람객(觀覽客)이 어디를 가더라도 보고, 즐기고, 느끼고, 감상할 수 있도록 정비(整備)하였다.

Ⅲ. 자유중국의 문화재관리(自由中國의 文化財管理)

1. 문화재관리행정(文化財管理行政)

가. 자유중국(自由中國)은 5권분립(權分立)으로 총통(總統)밑에 행정원(行政院)·입법원(立法院)·사법원(司法院)·고시원(考試院)·감사원(監査院)이 설치(設置)되어 있으며, 행정원산하(行政院傘下) 문화건설위원회(文化建設委員會)에서 문화예술(文化藝術)과 문화재(文化財)에 관한 업무(業務)를 총괄(總括)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는 어느 한 부처(部處)에서 전담(專擔)하지 않고 내정부(內政部)(내무부(內務部)), 교육부(敎育部)(문교부(文敎部)), 경제부(經濟部)등(藤) 여러 부처(部處)에서 담당(擔當)하고 국립고궁박물원(國立古宮博物院)은 행정원산하기관(行政院傘下機關)으로 매우 중요(重要)하게 여기고 있다.

(表7)

나. 행정원문화건설위원회(行政院文化建設委員會)는 第1處第2

2科에서 문화재(文化財)에 관한 업무(業務)를 담당(擔當)하며 여기서는 문화(文化)자산의 보존(保存)과 보급선양(普及宣揚)에 관한 계획(計劃)을 수립·심의·추진하며 심사평가(審査評價)하는 업무(業務)를 수행(遂行)하고 있다.

<表7> 문화재관리행정기구(文化財管理行政機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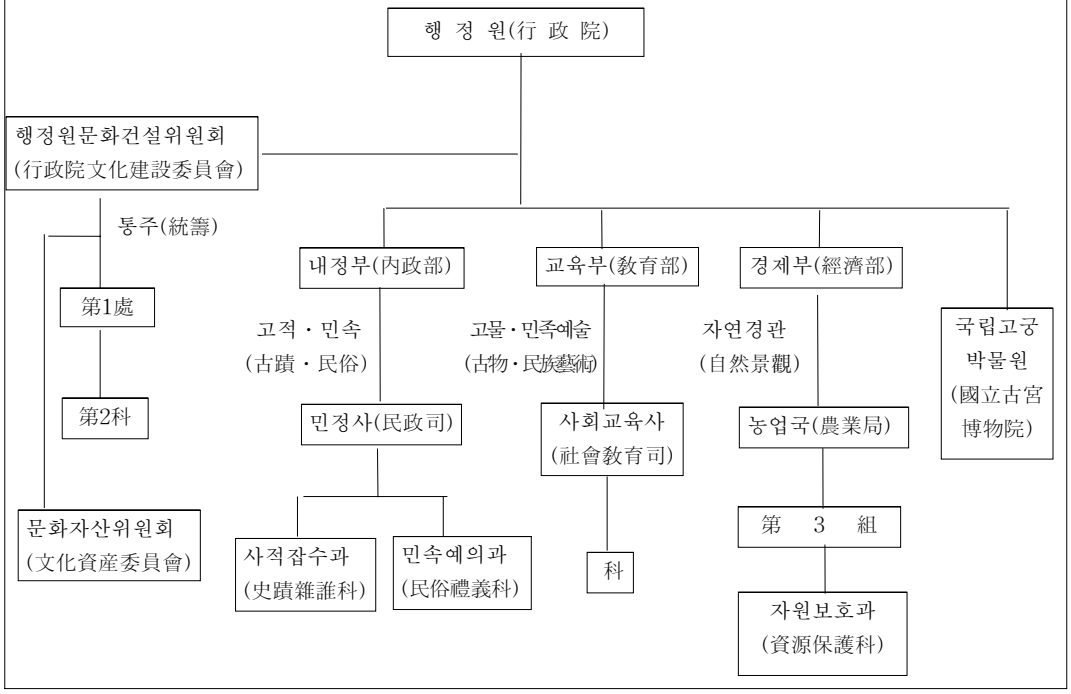

그리고 문화재(文化財)에 관한 자문기구(諮問機構)로 문화자산위원회(文化資産委員會)(21名)을 두고 있다.

2. 행정원문화건설위원회(行政院文化建設委員會)

가. 행정원문화건설위원회(行政院文化建設委員會)의 기능(機能)은 국가전반(國家全般)에 걸친 문화정책(文化政策)을 수립(樹立)하고 추진(推進)하며, 국민정신(國民精神)을 고양(高揚)하는 것으로 그 조직(組織)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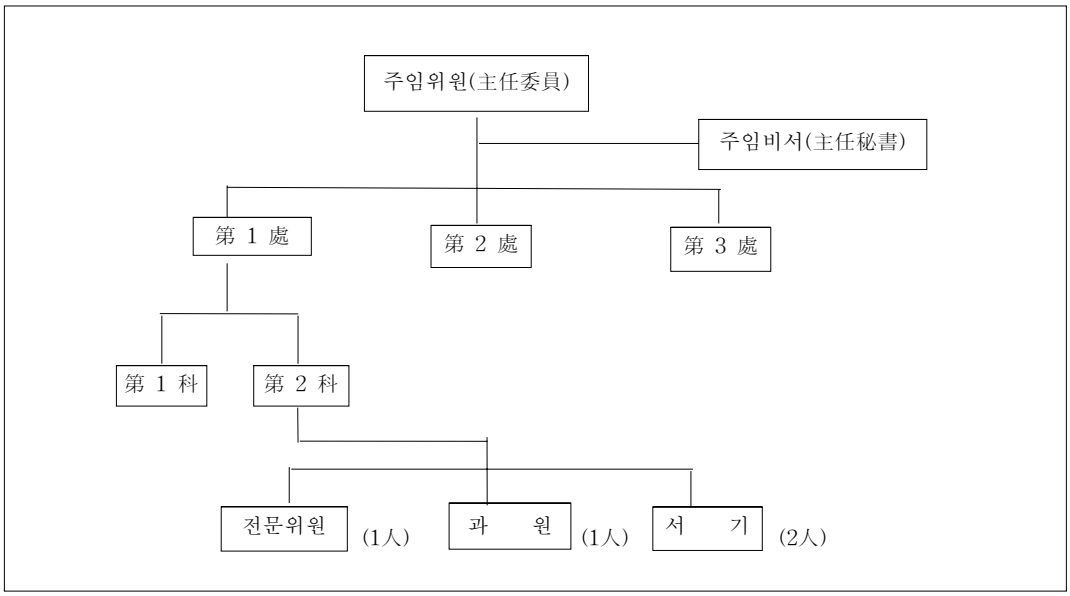

나. 문화건설위원회(文化建設委員會)는 주임(主任)위원밑에 3개처(個處)가 있으며, 비서실에서 의사진행을 주관하고 문서·경리·서무등의 업무(業務)를 담당(擔當)한다. 문화건설위원(文化建設委員)은 15人-19人으로 구성(構成)되며 위원(委員)의 임기(任期)는 2年이고 구성원(構成員)은 유관부처(有關部處)의 기관장(機關長)과 학자(學者)나 전문가(專門家) 및 문화계인사(文化界人士)로 구성(構成)되어 있다.

다. 第1處는 第1科와 第2科로 나누어져 있으며, 第1科는 문화건설기본방침(文化建設基本方針)과 계획(計劃)을 수립(樹立)·추진(推進)하고, 문화건설방안(文化建設方案)과 관련있는 계획(計劃)을 심의(審議)하고 집행(執行)을 협조(協調)하는 등의 업무(業務)를 담당(擔當)하고 있으며, 第2科는 문화재(文化財)의 보존(保存)정책의 수립(樹立)·심의(審議)·추진(推進) 및 심사평가(審査評價)등의 문화재(文化財)관련업무(關聯業務)를 담당(擔當)하고 있다.

라. 第2處는 문예(文藝)·희극(戱劇)·문화전파(文化傳播) 및 문화활동(文化活動)등에 관한 업무(業務)를 담당(擔當)한다.

마. 第3處는 음악(音樂)·미술(美術) 및 공연업무(公演業務)를 담당(擔當)한다.

3. 행정원문화건설위원회 문화자산위원회(行政院文化建設委員會 文化資産委員會)

가. 행정원문화건설위원회(行政院文化建設委員會)에는 문화(文化)자산(資産)에 관한 사항(事項)을 자문(諮問)하기 위하여 문화자산위원회(文化資産委員會)를 두고 있으며 위원(委員)은 19人-29人으로 구성(構成)되어 있고, 이는 다시 고적(古蹟)·고물(古物), 자연경관(自然景觀), 민속예술(民俗藝術)등 삼조(三組)로 나누어져 있다. 위원(委員)은 주임(主任)위원(委員)·학자(學者)·전문가(專門家)·문화계인사(文化界人士)들로 구성(構成)되어 있으며, 그 임기(任期)는 2年이다.

나. 문화자산위원회(文化資産委員會)는 月1회(回)소집(召集)하며 회의(會議)를 개최(開催)하며 필요시 임시회의(臨時會議)를 한다. 이들의 임무는 문화(文化)자산(資産)의 보호(保護)와 선양(宣揚)에 관한 사항(事項)의 심의(審議)와 문화(文化)자산(資産)에 대한 사업계획(事業計劃)에 자문(諮問)을 하는 것이다.

4. 중앙부처(中央部處)의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

가. 내정부(內政部)는 민정사(民政司)에서 명승(名勝)·고적(古蹟)의 조사(調査)와 보호(保護) 및 기록보존(記錄保存)에 관한 사항(事項), 민속(民俗)에 관한 사항(事項), 그리고 공자묘(孔子廟)·선철(先哲)·선열사묘(先烈司廟) 관리(管理)에 관한 사항(事項)을 관장(管掌)하고 있다.

나. 교육부(敎育部)는 사회교육사(社會敎育司)에서 문헌 및 고물(古物)의 보존사항(保存事項)과 민족문화(民族文化)의 부흥과 선양사항(宣揚事項), 박물관(博物館)·과학원(科學院)·예술관(藝術館)등에 관한 업무(業務)를 관장(管掌)하고 있다.

다. 경제부(經濟部)는 외국(外局)으로 되어 있는 농업국(農業局)에서 자연문화경관(自然文化景觀)에 대한 업무(業務)를 관장(管掌)하고 있다.

5. 국립고궁박물원(國立古宮博物院)

가. 자유중국(自由中國)의 국립(國立)고궁박물관(故宮博物館)은 북경(北京)의 "고궁박물원(故宮博物院)"과 남경(南京)의 "중앙박물원(中央博物院)"에 소장된 중국(中國) 5,000年의 역대왕조(歷代王朝)에서 전해 내려 온 진귀한 예술품(藝術品) 및 국보급(國寶級) 문화재(文化財) 62만점(萬點)을 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져와 소장한 것으로 3개월(個月)마다 약 3,000여점씩 바꾸어 전시하고 있다.

나. 국립고궁박물원(國立古宮博物院)에는 국립고궁박물원관리위원회(國立古宮博物院管理委員會)가 설치되어 있고 편제상 주임(主任)위원(委員)(1人)·부주임위원(副主任委員)(1人)·상무위원(常務委員)(9-11人)·위원(委員)(25-27人)으로 구성(構成)되어 있으며, 당연위원(當然委員)이 내정부장관(內政部長官)·교육부장관(敎育部長官)·행정원비서장(行政院秘書長)으로 되어 있다. 이들의 임기(任期)는 2年이며, 반년(半年)에 1회(回)씩 정기(定期)위원회(委員會)를 개회(開會)한다.

다. 국립고궁박물원관리위원회(國立古宮博物院管理委員會)의 임무(任務)는 문화유산(文化遺産)의 보관(保管)·정리(整理) 및 전시(展示)와 중국역대(中國歷代) 고물(古物)의 고증(考證), 그리고 중국고대문화예술(中國古代文化藝術)의 보급선양(普及宣揚)이다.

라. 국립고궁박물원(國立古宮博物院)은 원장(垣墻)과 부원장(副院長)(1-2人)이 있으며 임기(任期)는 2年이고, 처장(處長)(3人), 조장(組長)(3人), 실주임(室主任)(3人)과 연구원(研究員)(4-6人), 부연구원(副研究員)(6-8人), 비서(秘書)(2-3人), 편찬(6-8人), 편집(10-16人), 기정(2人), 기사(7-9人), 기좌(5-6人), 간사(13-19人), 조리간사(18-24人), 고용원(79-90人)과 회계사(會計士)·인사실(人事室)등으로 되어 있으며 3處는 기문처·서화처·도서문헌처이고, 3조(組)는 전람조(展覽組)·출판조(出版組)·등기조(登記組)이며, 3실(室)은 비서실(秘書室)·총무실(總務室)·과학보존실(科學保存室)로 구성(構成)되어 있다.

6. 자유중국(自由中國)의 문화자산(文化資産)

가 .자유중국(自由中國)의 문화재관계법령(文化財關係法令)으로써는 1982年 5月 6日 제정(制定)된 문화자산보호법(文化資産保護法)과 1982年 2月 22日 제정(制定)된 문화자산보존법시행세칙(文化資産保存法施行細則)이 있다.

나. 자유중국(自由中國)의 문화재(文化財)는 고물(古物)·고적(古蹟)·민족예술(民族藝術)·민속급유관(民俗及有關)문물(文物)·자연문화경관(自然文化景觀)으로 구분(區分)한다.

다. 고물(古物)은 중요고물(重要古物)로 교육부(敎育部)에서 지정(指定)하며 그 중 특이(特異)한 것은 국보(國寶)로 지정(指定)하도록 규정(規定)하고 있으나, 아직(直) 지정(指定)되지 않았다.

라. 고적(古蹟)은 제1급(級)·第2급(級)·第3급(級)으로 구분(區分)하여 지정(指定)하며, 第1급(級)은 내정부(內政府)에서 주관(主管)하고, 第2급(級)은 성(省)(시(市)) 정부민정청(政府民政廳)에서 주관(主管)하며, 第3급(級)은 현(縣)(시(市))정부(政府)에서 주관(主管)하여 관리(管理)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적(古蹟)의 보호(保護)를 위하여 대만의 고적(古蹟)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第1급(級) 53개소(個所), 第2급(級) 84개소(個所), 第3급(級) 207개소(個所)등 총(總)344개소(個所)를 선정(選定)하여 第1급(級)은 15개소(個所)를 지정(指定)하였고, 第2급(級)과 第3급(級)은 이를 확정하여 지정(指定)을 검토(檢討)중이다.

마. 민속예술(民俗藝術)은 민족(族) 및 지방특유(地方特有)의 예술(藝術)로서 교육부(敎育部)에서 중요민족예술(重要民族藝術)과 예사(藝師)를 지정(指定)하도록 규정(規定)하고 있으나 지정(指定)한 종목(種目)이 없었다.

바. 민속급유관문물(民俗及有關文物)은 내정부(內政府)에서 지정(指定)하면 지방정부(地方政府)에서 보존(保存) 또는 보호(保護)하도록 규정(規定)되어 있으나, 아직 지정(指定)한 것이 없었다.

사. 자연문화경관(自然文化景觀)은 인류역사문화(人類歷史文化)의 배경(背景)·구역(區域)·환경(環境) 및 진귀하고 희귀한 동식물(動植物)로써 이들은 생태보육구(生態保育區)·자연보육구(自然保育區)·진귀희유동식물(珍貴稀有動植物)로 나누어져 지정(指定)이 되며, 지정(指定)할 때에는 경제부(經濟部)에서 교육부(敎育部)와 교통부(交通部)등의 협의(協議)를 거쳐 지정(指定)한다.

아. 문화자산보존(文化資産保存)의 계획수립(計劃樹立)과 관련된 공동(共同)사항(事項)의 처리(處理)는 문화건설위원회(文化建設委員會)에서 각부처(各部處)와 협의(協議)를 거쳐 결정(決定)한다.

7. 자유중국(自由中國)의 문화재관리실태(文化財管理實態)

가. 자유중국(自由中國)의 고궁박물원(古宮博物院)에 소장되어 있는 수 많은 문화재(文化財)는 세계(世界)에서 손꼽히는 우수한 것들로써 그 보존관리(保存管理) 및 전시(展示)·홍보(弘報)·안내체제(案內體制)가 완벽하게 확립되어 있으며, 이들은 국보(國寶)나 중요고물(重要古物)등으로 구분(區分)하여 지정(指定)은 하지 않은 상태이다.

나. 자유중국(自由中國)은 우리나라나 일본(日本)과 같은 문화재관리체제(文化財管理體制)를 갖추기 위하여 최근(最近) 관계법령(關係法令)을 제정(制定)하였으며, 이들 법령(法令)에 따라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체계(體系)를 확립(確立)하기 위하여 고적(古蹟)등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實施)하고, 第1급(級)부터 지정(指定)하고 있으며, 기타 민속예술(民俗藝術)·민속급유관(民俗及有關)문물(文物)과 자연경관(自然景觀)등에 대해서도 내부적(內部的)으로 보호(保護)할 준비(準備)와 연구(硏究)를 계속하고 있었다.

Ⅳ. 맺는말

오늘날 세계각국(世界各國)은 급속(急速)한 경제발전(經濟發展)과 더불어 선조(先祖)들의 지혜와 슬기가 담긴 문화유산(文化遺産)에 대한 관심(關心)이 높아져가고 있으며, 관리(管理)대상문화재(對象文化財)의 증가(增加)와 보존(保存)기술(技術)의 향상(向上)으로 문화재(文化財)를 담당(擔當)하는 행정기구(行政機構)또한 점차 확대(擴大)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가 문화재(文化財)의 보존(保存)·관리(管理)에 관심(關心)을 기울이기 시작(始作)한 것은 1960년대초(年代初)부터이며 그 이전(以前)인 일제시대(日帝時代)와 해방후의 혼란기(混亂期), 6·25사변등의 문화적(文化的) 암흑기(暗黑期)를 거쳐오면서 수많은 귀중(貴重)한 문화유산(文化遺産)이 해외(海外)로 유출(流出)되었거나 전화(戰禍)로 파손(破損)·소실(燒失)되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조상(祖上)의 손때가 묻어있는 유산(流産) 하나하나에 민족(族)의 혼(魂)과 정신(精神)이 깃들어 있음을 생각할 때, 이를 잘 보존(保存)·관리(管理)한다는 것은 민족적(民族的) 자부심(自負心)을 지키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인류문화

발전(人類文化發展)에도 기여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는 선조(先祖)에게서 물려받은 문화유산(文化遺産)을 보존(保存)·관리(管理)·발전(發展)시켜 후손(後孫)에 물려준다는 의미(意味)에서 우리에게는 역사적(歷史的) 의무(義務)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무(義務)를 성실(誠實)히 수행(遂行)하기 위해서는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의 과학화(科學化)·체계화(體系化)가 절실히 요구(要求)된다. 우리나라도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에 상당한 노력(努力)을 기울이고 있으나, 외국(外局)과 비교(比較)해 볼 때 아직도 개선(改善)·보완(補完)해야 할 점이 많다고 본다.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그들은 동산문화재(動産文化財)의 보존(保存)·관리(管理)·전시(展示)·공개(公開)·운영(運營)과 부동산문화재(不動産文化財)의 수리(修理)·관리(管理)·공개(公開)·운영(運營)등에 있어서 현실적(現實的)이고 능률적(能率的)인 관리체제(管理體制)를 운영(運營)하고 있었다. 또한 국민(國民)의 문화재애호사상(文化財愛護思想)의 고취를 위한 보급선양노력(普及宣揚努力)과 방재활동(防災活動)이 활발(活潑)하고, 지방(地方)의 문화재관리조직(文化財管理組織)이 치밀하게 구성되어 효율적(效率的)으로 관리(管理)함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재보존관리(文化財保存管理) 수준(水準)을 향상(向上)시키기 위해서 외국(外局)의 문화재관리제도(文化財管理制度)와 우리의 제도(制度)를 비교검토(比較檢討)하고 연구(硏究)하여 끊임없이 보완(補完)·개선(改善)해 나가야 할 것이다.